



## ‘모여라! 협회가 쏜다!’

모터스포츠 동호회 최강팀은 어디?

모터스포츠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월 회원총회를 통하여 전달하여주신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모터스포츠인들이 모인 동호회 활동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여행, 골프, 낚시, 볼링과 같은 취미 동호회부터 소규모 연구모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 제 목 : ‘모여라! 협회가 쏜다!’
- ✓ 기 간 : 2013년 8월 8일(목) 부터 11월 3일(일)까지[88일간]
- ✓ 신청방법 : ①동호회 신청서 작성 ②동호회 활동 보고서 제출
- ✓ 동호회 구성 자격 :  
13’ KARA라이선스(드라이버, 오피셜)소지자 또는 정회원 등록자 5인 이상 포함
- ✓ 선정방법 : 활동이 우수한 동호회 선정
- ✓ 지원금액 : 최우수동호회 100만원(1팀), 우수동호회 50만원(4팀),  
참가동호회 감사기념품
- ✓ 쏘는 날 : 모터스포츠인의 날 밤 행사
- ✓ 제출처 : [euny@kara.or.kr](mailto:euny@kara.or.kr) 담당자 정은희



## KARA 모터스포츠 동호회 등록 신청서

동호회명				
임원현황	회장 (대표자)			
	총무		홈페이지	
	연락처		이메일	
활동분야				
회원수 (라이선스소지자 현황)				
활동계획				
월 회비	※ 회비가 없는 경우는 미기재			

상기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호회 대표자 (인/서명)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 귀중



# KARA 모터스포츠 동호회 활동보고서

※ 매 활동 당 1건의 보고서 제출

동호회명		대표자	
참가인원		행사장소	
		일자	
연락처		이메일	

활동결과(만족도 등)

기타 사항

참여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성별	모터스포츠 활동처	라이선스 번호	연락처
			(지역/팀 이름 등)		

활동 사진(별첨)

년 월 일

동호회 대표자 (인/서명)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 귀중



##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 동호회 지원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회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량한 모터스포츠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동호회”란 한국자동차경주협회 회원들이 협회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다만, 향우회, 친목계, 등 학연·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특정팀 또는 파트에 한정된 모임은 제외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협회 사무국의 승인을 받고 동호회 소개에 등록된 동호회에 적용한다.

**제 4 조(사무국)**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동호회의 총괄 관리 및 동호회의 등록·취소 여부를 검토·승인
2. 각 동호회의 활동계획 및 지원 사항을 검토·승인
3. 동호회의 행사계획이 조직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행사의 중단 또는 연기를 결정

**제 5 조(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무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동호회 등록신청서
2. 동호회 회칙
3.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
4. 해당 연도 행사계획서

② 동호회는 본협회 회원(당해년도 가입이 완료되어야 함.)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동호회는 특정 등급이나 특정팀 소속 회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사무국은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동호회 지원기준)** 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각 동호회가 제출한 활동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에서 시상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동호회
2. 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
3. 동호회 지원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
4. 제 4 조제 3 호에 따른 사무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동호회

**제 8 조(해산)** ① 해산에 관한 사항은 동호회 회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동호회의 해산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

②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산 후 7 일 이내에 사무국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